

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2월 27일

여수시장 김경민



여수시 조례 제2279호

붙임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”를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지방행정체제 개편”을 “지역균형발전”으로, “제27조 및 제29조”를 “제40조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법 제28조제2항”을 “특별법 제4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제4호 중 “주민참여예산”을 “예산(주민참여예산, 주민세 환원)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6호 중 “주민참여예산”을 “예산(주민참여예산, 주민세 환원)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4호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
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여수시 읍·면·동에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주민자치회”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읍·면·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지역균형발전----- ----- 제4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2. ~ 4. (생략)

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4조 (주민총회) ① (생략)

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,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읍·면·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

5. (생략)

③ ~ ⑦ (생략)

제15조 (마을계획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읍·면·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능) ----- 특별법 제40조제3항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 (주민총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예산(주민참여예산, 주민세 환원)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 (마을계획의 구성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예산(주민참여예산, 주민세 환원)-----

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7조(정치적 중립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20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
5.·6. (생략)

② (생략)

--

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정치적 중립) -----
----- 특별법 제40조제5항-----

-----.

제20조(위원의 해촉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특별법 제40조제5항-----

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